

별첨

---

#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

---

2015. 5.

금융위원회

# 목 차

I. 전자증권제도 의의 .....	1
II.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 .....	3
III. 향후 추진일정 .....	9

# I . 전자증권제도 의의

- **(개념)** 전자증권제도란 **증권의 발행, 유통**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

- **집중예탁제도와의 비교** : 예탁원에 실물을 보관하고 거래는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전자증권제도와 유사하나 차이점 존재
  - (i)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실물증권이 필요하므로 **발행비용 발생**
  - (ii) **예탁주주가 실물반환을 요청**할 수 있어, 실물증권에 수반되는 위험 잔존

- **(기대효과)** 증권발행비용 감소, 실물증권 분실·위조 방지, 증권 거래 투명성 제고, 자본시장 Fintech 기반강화 등의 효과 기대

- ① 실물증권 제조·교부·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**주주명부 작성, 명의개서**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가능
  - ※ 5년간 총 4,352억원의 증권 발행·유통 비용 감소 추정(자본시장연구원)

- ② 실물증권의 분실, 위조 위험\*도 제거

\* 분실·위조 규모('13년, 억원): (주식) 525 (채권) 707 (CD) 246 (CP) 151

- ③ 매매·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**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** 및 '5% 보유공시' 등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

- ④ **증권의 발행·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·가공**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Fintech 서비스의 등장 등 **핀테크 생태계 조성**에 기여

- 전자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실제주주 확인이 용이하고 실물 증권 인수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\* 또한 실제주주 Big-data 분석을 통한 회사별 재무전략 자문 등 새로운 Fintech 업종의 출현도 가능

## 참고1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과 및 해외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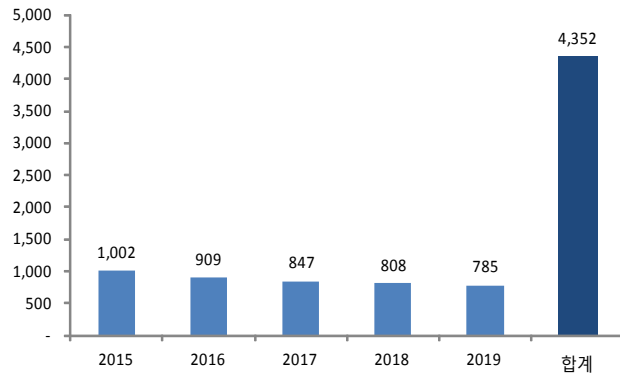
### < 도입효과 >

□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감소분은 5년간 연평균 870억원, 총 4,352억원 가량으로 추정 (자본시장연구원)

○ 총 비용기준으로는 운용비용 절감분이 2,458억원으로 가장 크고, 위험비용 1,713억원, 기회비용 181억원 순

#### <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(억원) >

구분	주요 비용절감 요인
운용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물증권 제조·교부·보관</li> <li>실물 입출고</li> <li>주주명부작성, 명의개서</li> </ul>
위험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물증권의 도난, 위변조</li> </ul>
기회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</li> </ul>



### < 해외사례 >

□ 1983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요국가에서 대부분 도입 운영중

\* OECD 국가중 독일·오스트리아·한국을 제외한 31개국에서 이미 도입

○ 동 아시아에서는 중국·일본·대만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 완료

#### < 주요국 전자등록제도 도입·운영 현황 >

국가	시행시기	전자화 의무증권	전자등록기관
덴마크	1983(세계최초)	상장증권	VP센터(예탁기구)
프랑스	1988년	모든증권	Euroclear France
중국	1993년	상장증권	중국증권등록결제회사
일본	2004년	상장증권	JASDEC(예탁기구)

## II .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

### (1) 대상 증권

□ 자본시장법상 증권<sup>1)</sup>은 CP, 투자계약증권,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등 일부 예외<sup>2)</sup>를 제외하고 전자증권화 대상에 포함

- 1, 지분증권, 채무증권, 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
- 2, CP(設券증권으로 실물폐지 불가능), 합자회사등 출자지분(양도제한), 투자계약증권(계약이 개별적·비정형적)

○ 유통 필요성이 높고 현재 이미 의무 예탁되는 증권\*의 경우에는 전자증권화를 법정 의무화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실효성 제고

\* 상장 지분증권, 상장 채무증권, 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

○ 비상장 주식·채권의 경우 거래규모 등 측면에서 의무화 필요가 크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

-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전자증권화로 인한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비용 감소 등 혜택이 커 대부분 전자증권화될 것으로 예상

< 증권종류별 현행 예탁제도 편입 현황 >

	지분증권(백만주)		채무증권(조원)		수익증권 (조좌)	파생결합 증권	증권예탁 증권(백만증서)
	상장	비상장	상장	비상장			
발행잔량	60,966	21,630	1,516	98	412	-*	56
예탁비율	92.4%	79.4%	96.3%	96.4%	100%	100%	100%

\* ELW 192억워런트, ELS 55조원, DLS 27조원

□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예탁대상이 되어온 양도성예금증서(CD)도 전자증권화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

## 참고2

## 자본시장법상 증권별 전자증권화 적격 여부

증권 구분	非설권 증권성	유통 용이성	권리 정형성	관리 용이성	적격 여부	
채무증권	국채	○	○	○	○	
	지방채	○	○	○	○	
	특수채	○	○	○	○	
	금융채	○	○	○	○	
	회사채	○	○	○	○	
	<b>CP<sup>1)</sup></b>	<b>X</b>	<b>○</b>	<b>○</b>	<b>○</b>	<b>X</b>
	채권형ABS/MBS	○	○	○	○	○
	수익증권발행신탁사채	○	○	○	○	○
지분증권	주식	○	○	○	○	
	신주인수권증서/증권	○	○	○	○	
	투자회사주식	○	○	○	○	
	<b>합자회사 등 출자지분<sup>2)</sup></b>	<b>○</b>	<b>X</b>	<b>X</b>	<b>X</b>	<b>X</b>
수익증권	투자신탁수익증권	○	○	○	○	
	금전신탁수익증권	○	○	○	○	
	수익증권형ABS/MBS	○	○	○	○	
	수익증권발행신탁수익증권	○	○	○	○	
	<b>투자계약증권<sup>3)</sup></b>	<b>○</b>	<b>X</b>	<b>X</b>	<b>X</b>	<b>X</b>
파생결합증권	ELW	○	○	○	○	
	ELS	○	○	○	○	
	DLS	○	○	○	○	
증권예탁증권	○	○	○	○	○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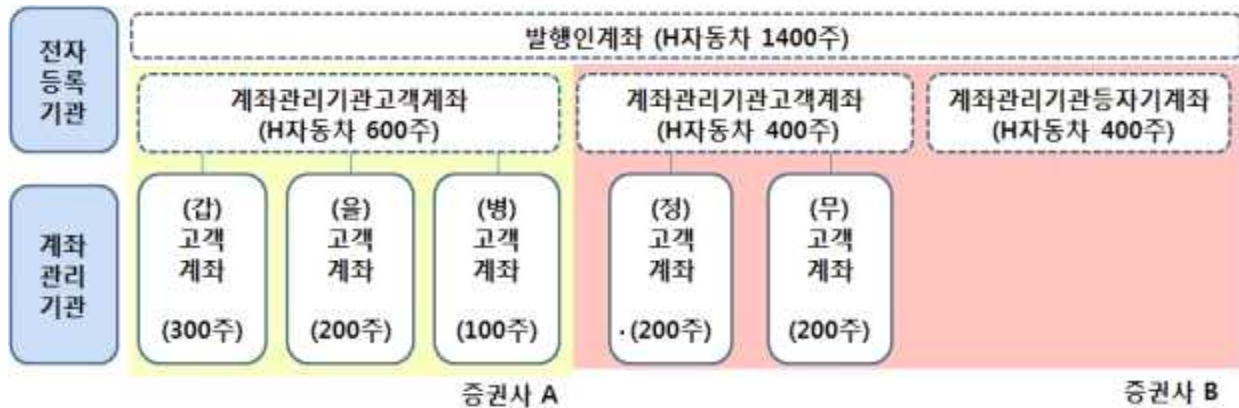
1)설권증권 성격으로 인해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

2)지분양도가 제한(사원동의 요구)되며, 이익배분·손실분담시 사원간 차등 가능

3)사업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내용이 개별적·비정형적임

## (2) 운영체계

### [전자증권제도 운영기관 및 계좌]



#### □ (운영기관)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

\* 복층구조 계좌관리 체계로서, 단층제(전자등록기관에 투자자 계좌를 직접 개설)에 비해 트래픽 분산 등으로 시스템이 안정되고 관련비용도 감소

○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담당하며, 증권발행회사 계좌 ("발행인계좌") 및 투자자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 계좌("계좌관리기관고객계좌")를 관리

- 금융회사 자기소유분, 금융회사에 위탁하지 않은 일반투자자 소유분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("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")도 운영

○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위탁을 받은 증권사,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"고객계좌"를 관리

#### □ (증권발행 및 권리변동) 증권이 발행되면 발행인계좌에 발행수량이 등록되며, 투자자별 보유현황은 계좌관리기관에 등록\*

\* 투자자가 직접 소유하는 물량은 전자등록기관의 "자기계좌"에 등록

○ 매매, 담보설정 등 개별 투자자의 권리변동 사항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자기계좌에 등록

○ 각 계좌간 총합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상호 확인될 수 있도록 교차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관계 오류를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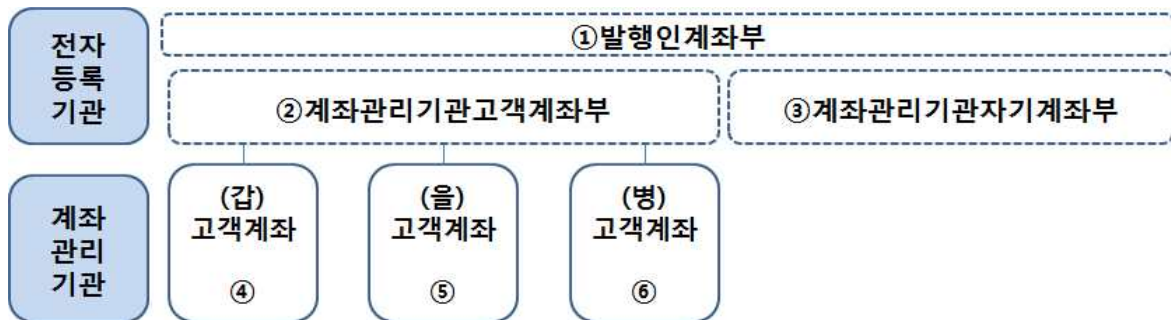
### (3) 투자자보호 장치

□ "전자증권 초과등록" 오류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○ 초과등록은 실제 발행된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등록되는 경우로, 전자등록기관,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오류로 발생

※ 과소등록의 경우는 적정 권리자에게 추가배분하여 문제해결 가능

< 초과등록 발생형태 >



\* ①<②+③ → 초과등록(전자등록기관 귀책)

②<④+⑤+⑥ → 초과등록(계좌관리기관 귀책)

□ 초과등록이 발생할 경우, 거래안정성 유지를 위해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에서 동 수량을 매입하여 소각

○ 소각비용은 초과분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관리기관이 우선 부담하되

- 해당기관의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

※ 현재도 예탁증권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탁결제원과 금융회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

□ 초과분 발생으로 초래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의결권 제한\* 등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

※ 예) 최초 80주가 발행된 상태에서 100주가 등록된 경우, 전체 100주에 대해 모두 20%씩 의결권을 제한 → 의결권 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,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배상



#### (4) 기존증권의 전자증권 전환 절차

□ 법 시행일에 기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은, 현재  
예탁대상인지와 의무적 전자화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

< 전환대상 증권의 유형 >

현재 예탁대상여부 전자화 의무여부	예탁대상		非예탁대상
	既예탁분	未예탁분	
의무적 전자화	A1	A2	존재하지 않음
선택적 전자화	B		별도 조치 불필요

(유형별 증권예시) A: 상장증권, B: 비상장증권

① [A1] 법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전자증권 전환

② [A2] 법 시행일 3개월전까지 증권 발행인이 소유자에게 전자  
증권 전환계획\*을 공지하고 예탁 요구

\* 법시행일 전에 예탁원이나 명의개서 대리기관에 실물을 접수시켜야 함

- (법 시행일 전까지 예탁) 법 시행일에 전자증권 전환

- (법 시행일 전까지 미예탁) 임시적으로 특별계좌에 등록

< 특별계좌 운영 계획 >

- 전자증권화 대상 증권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, 주주명부상 소유주 명의의 특별계좌에 우선 등록하고 추후 소유권을 확정
- 특별계좌에 등록 되더라도 실제 매매는 실물주권을 제시하는 경우부터 허용(이중매매 등 거래혼란 예방)

③ [ B ] 예탁원이 법시행일 5개월전에 발행사에 전자증권 전환  
여부를 결정하여 통보(법시행 3개월전까지)해줄 것을 요청

- 전자증권 전환을 신청한 발행사에 대하여 기존 주식을 전자  
증권으로 전환

## (5) 기타 주요내용

- ① **(예탁제도 유지)** 실물 예탁이 불가피한 CP, 금에 대한 예탁제도 운영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예탁제도 근거 유지

< CP 및 금 예탁현황 >

		'14.9	'14.10	'14.11	'14.12	'15.1	'15.2	'15.3	'15.4
CP	(조원)	130	132	130	127	132	132	132	130
금	(kg)	327	480	619	707	758	862	997	1,168

- ② **(전자등록기관 감독)**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법무부의 공동감독권한 인정

- 다만 법무부의 공동감독권 행사는 전자증권제도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

※ (유사사례)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 업무, KINET (무역협회 자회사)이 수행하는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 업무

<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한 >

- 공동허가 ▪ 정관 및 업무규정 승인 협의
- 검사 요청 및 소속 공무원 참여 ▪ 검사보고서 접수 ▪ 제재조치시 협의

- ③ **(관련법 정비)** 공사채등록법\*의 경우 전자증권법 시행시 입법 목적이 달성되므로 전자증권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

\* 동법을 근거로 실물 없이 등록발행되는 채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서도 전자등록이 가능하고, 기발행된 물량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될 예정

- 다만, 은행이 동법에 따라 자행 등록·발행하는 후순위채, CD, 은행채 등은 현행대로 발행\*가능하도록 은행법에 근거 마련

\* 유통목적일 경우 → 예탁원 등록발행, 보유목적일 경우 → 자행등록발행

- 전자단기사채법은 전자단기사채를 전자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상법에 대한 특례조항\*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증권법과 통합

\* ①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 위임

② 사채원부 미작성 ③ 사채권자집회제도 미적용

### Ⅲ. 향후 추진일정

---

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
-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
- 차관회의,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
- 국회 법안통과 추진('15년 정기국회)